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비상임이사인 사용자·근로자대표의 구체화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3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비상임이사인 사용자·근로자대표의 구체화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등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등이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 4항).

Ⅲ. 검토의견

1. 비상임이사인 사용자·근로자대표의 구체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인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를 각각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임원) ① ~ ③ (생략)	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u>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u> 및 근로자 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 ----- ----- ----- ----- ----- --. ----- <u>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u> ----- ----- -----

⑤·⑥ (생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¹⁾,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으로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하는데,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이사임.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됨.

개정안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중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를 각각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 1)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안은 비상임이사인 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를 각각 전국적 규모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참여자에게 더 큰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다음 <표>와 같이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노동조합원의 1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 속하지 않은 특정 분야의 근로자 대표 등이 이사에 선임될 필요가 있을 때 총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표> 2023년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 비교

구 분	인원수	비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60,162명	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86,618명	39.7%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7,821명	0.3%
전국노동조합총연맹	1,441명	0.1%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1,068명	0.0%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511명	0.0%
미가맹	479,758명	17.5%
합 계	2,737,379명	100%

자료 : 고용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12.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특정 분야의 사용자·근로자 대표의

이사 참여가 필요하다더라도 확충이 어려울 수 있고,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도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소속 중에서 임명할 수 있어²⁾ 현행법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

2) 2004년 이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대표로 위촉된 16명 중 15명이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소속임.